

예 산 총 칙

2017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758,451,891	22,753,557
일반회계	668,796,616	20,063,898
특별회계	89,655,275	2,689,658
공기업특별회계	72,009,432	2,160,28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6,150,547	784,516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6,282,211	1,088,466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9,576,674	287,300
기타특별회계	17,645,843	529,375
강릉시주민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10,000	300
강릉시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780,058	23,402
강릉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559,240	106,777
강릉시교통사업특별회계	3,114,702	93,441
강릉시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3,091,688	92,751
강릉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특별회계	2,778,955	83,369
강릉시주택사업특별회계	4,311,200	129,336

제 2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7년도 채무부담행위사업은 "해당없음"

제 4 조 2017년도 계속비사업은 별첨 "계속비 사업조서"와 같다.

제 5 조 201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6,955,000천원으로 한다.

제 6 조 2017년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8,10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 비목 및 채무상환원리금의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승인을 얻은것으로 한다.

2017재정자립도 : 18.72%